

482-110 경기도 양주시 삼승로 31 (전화) 070-7797-2583 (문의) news.pcis@daum.net
 대표 손영준 <http://cafe.daum.net/pcis>

수 신 : 각 언론사 사회부, 보안 담당기자

발 신 : 정보화사회실천연합

문 의 : 손영준 T. 010-8677-9515

작 성 일 : 2013. 10. 10(월)

제 목 : [보도자료] 금년 3월 조사 후 공공기관의 개인정보보호법 준수 실태 재 조사 (총 3페이지)

일부 공공기관 개인정보보호 아직도 뒤집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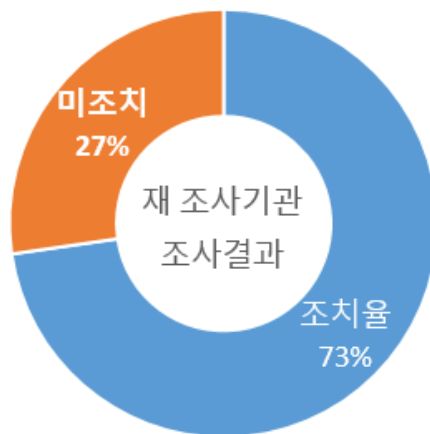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 배짱 좋은 일부 공공기관

1. '개인정보보호법'[[법률 제10465호, 2011.9.30, 시행](#)]이 시행 된지 2년을 맞이하여 2013년3월 조사한 '기획재정부장관이 지정한 공공기관' 중 2013년3월 조사에서 미 준수한 99개 공공기관에 대하여 재조사를 실시하였습니다.

2. 실태조사는 외부에서 개인정보보호의 척도를 확인할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인 "개인정보의 보호조치"사항 중 기술적 조치에 속하는 **전송구간 암호화(보안서버구축, SSL)**에 대하여 '비밀번호' 및 '주민등록번호'의 암호화 준수 여부에 대하여 조사하였습니다.

3. 조사결과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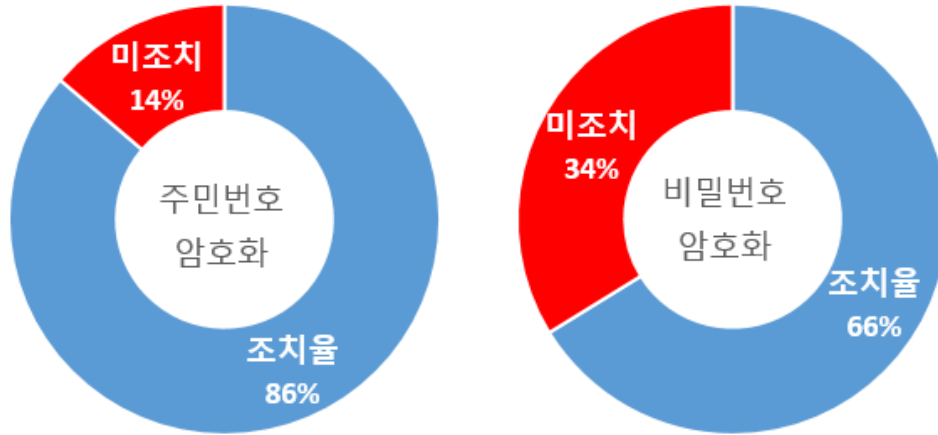
가) 2013년3월 조사에서 미준한 99개 공공기관 중 비밀번호와 주민번호 미 준수기관이 27개 기관으로 전체 27%를 보이고 있습니다.



<도표 1. 재 조사한 공공기관의 미 준수 비율>

나) 각 항목별 재조사 대상기관의 미준수율은 '비밀번호'는 71개 기관 중 38%(24기관), '주민번호'는 58개 기관 중 14%(8기관)으로 나타났습니다.

보안서버 구축 암호화 조치율



<도표 2. 보안서버 구축 암호화 적용률>

4. 금년 3월 실태조사 이후 많은 공공기관에서 개인정보를 취급함에 있어서 보안서버 구축을 통하여 보안취약점을 개선하였으나 아직도 일부 공공기관들이 '개인정보보호법' 시행 2년이 지난 현시점에도 이행하지 않고 있는 행태에 대하여 해당 공공기관들의 이유가 궁금합니다.

참고. 관련법령

- 개인정보 보호법[시행 2011.9.30] [법률 제10465호, 2011.3.29, 제정] 행정안전부 제24조(고유식별정보의 처리 제한) ① 개인정보처리자는 다음 각 호의 경우를 제외하고는 법령에 따라 개인을 고유하게 구별하기 위하여 부여된 식별정보로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정보(이하 "고유식별정보"라 한다)를 처리할 수 없다.
 1. 정보주체에게 제15조제2항 각 호 또는 제17조제2항 각 호의 사항을 알리고 다른 개인정보의 처리에 대한 동의와 별도로 동의를 받은 경우
 2. 법령에서 구체적으로 고유식별정보의 처리를 요구하거나 허용하는 경우②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기준에 해당하는 개인정보처리자는 정보주체가 인터넷 홈페이지를 통하여 회원으로 가입할 경우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아니하고도 회원으로 가입할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여야 한다.
 - ③ 개인정보처리자가 제1항 각 호에 따라 고유식별정보를 처리하는 경우에는 그 고유식별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암호화 등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 ④ 행정안전부장관은 제2항에 따른 방법의 제공을 지원하기 위하여 관계 법령의 정비, 계획의 수립, 필요한 시설 및 시스템의 구축 등 제반 조치를 마련할 수 있다.

제29조(안전조치의무) 개인정보처리자는 개인정보가 분실·도난·유출·변조 또는 훼손되지 아니하도록 내부 관리계획 수립, 접속기록 보관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기술적·관리적 및 물리적 조치를 하여야 한다.

◎ 개인정보 보호법 시행령

제63조(과태료의 부과기준) 법 제75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기준은 별표 2와 같다.

[별표 2] [시행일:2012.3.30] 제2호자목 과태료의 부과기준(제63조 관련)

위반행위	근거 법조문	과태료 금액		
		1회 위반	2회 위반	3회이 상 위 반
자. 법 제24조제2항을 위반하여 정보주체가 주민등록번호를 사용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제공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5호	600	1200	2400
차. 법 제24조제3항, 제25조제6항 또는 제29조를 위반하여 안전성 확보에 필요한 조치를 하지 않은 경우	법 제75조 제2항제6호	600	1200	2400

-끝-